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2024. 10. 22.(화)



경제건설위원회

목 차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4.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56호
- 발 의 일: 2024년 9월 26일
- 제 출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 상정 및 의결: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2024.10.16.)

2. 제안사유

-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긴급복지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및 대구광역시 지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지방세정 지원을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세사기피해자 범위 확대(안 제2조)
- 지원사업에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긴급복지지원 신설(안 제4조제1항)
- 유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액의 차액 지급 또는 비지급 명시(안 제4조제2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긴급복지지원법」, 「지방세기본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현저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관련 법률상 지원과 가계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을 신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범위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으로 현저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지방세 관련 법률상 지원 방안에 따라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조치(「지방세징수법」 제25조 등),
 -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 등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방세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포함)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됨에 따라 안정적인 생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지침에 의거 군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군별 전세사기 피해 접수 현황(특별법 2023. 6. 1. 시행)

(건수, 억원, ' 24. 9. 8. 기준)

구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	달서	달성	군위
접수건수	690	56	51	74	179	87	57	153	33	0
피해금액(억 원)	790.3	59.3	62.4	75.7	172.4	100.8	81.7	193.4	44.6	0

- 대구시 전체 피해자 결정 604건 (인정 483건, 불인정 121건)
- 달성군 - 피해자 신청 : 33(다가구 3, 아파트 30)
 - 피해자 결정(달성군) : 26(인정 18 (피해자 8/ 피해자등 10), 불인정 8)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숙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57호
- 발 의 일: 2024년 9월 26일
- 발 의 자: 이연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 상정 및 의결: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2024.10.16.)

2. 제안사유

-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미숙아에 대한 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여 미숙아 양육에 대한 보호자 부담 경감과 미숙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지원사업 및 접종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의 고위험군 영유아는 미숙아, 6개월 미만 영아, 만성 폐질환이 있는 2세 미만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2세 미만 소아, 면역 체계가 약화된 소아 등이나,
- 본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 영유아의 기준을 임신기간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로서 접종일 현재 출생 후 12개월 이내인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에서는 미숙아를 임신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저체중아로 구분하고 있음.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일반적으로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1~2주 안에 회복되지만, 영유아와 노인에게 특히 증상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2020), 「미숙아 지원확대 및 지속관리체계」 연구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의 유행 계절은 10월 ~ 3월로 감염 경과는 중증으로 높은 입원율·사망률(50% 이상)을 초래하고 있으나, 전체 미숙아 대비 예방접종 경험률은 41.5%(1.5kg 미만 아동은 79.2%)에 불과합니다.

-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숙아 자체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실정으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주요 요인이 치료제의 부담되는 가격(15.4%)보다 질병에 대한 정보 부족(67.3%)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숙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조례안은 만혼에 따른 출산연령 상승 등 출산환경의 변화와 미숙아 의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예방접종비에 대한 지원의 필요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미숙아 양육에 대한 보호자 부담 경감으로 건강한 육아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최근 3년 미숙아 출생률('20. ~'22. 기준)

- 저체중아 출생률(국가통계포털, '20.~'22. 시도별 출생 시 체중별 출생)

(단위 : 명, %)

시도별	출생 시 체중별	2020	2021	2022
전국	출생아 수	272,337	260,562	249,186
	2.5kg 미만 출생	18,338	18,667	19,213
	비율	6.73	7.16	7.71
대구광역시	출생아 수	11,193	10,661	10,134
	2.5kg 미만 출생	773	760	814
	비율	6.91	7.13	8.03

- 조산아 출생률(국가통계포털, '20.~'22. 시도별 임신기간별 출생)

(단위 : 명, %)

시도별	출생 시 체중별	2020	2021	2022
전국	출생아 수	272,337	260,562	249,186
	37주 미만 출생	22,911	23,760	24,273
	비율	8.41	9.12	9.74
대구광역시	출생아 수	11,193	10,661	10,134
	37주 미만 출생	979	934	988
	비율	8.75	8.76	9.75

※ 미숙아 1명당 비용 산출(7.7kg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4.7.1. 기준))

구분	분류	보험상한가(원)	투약량(mg)		접종비용 (원)	비고
시나지스 주사액 50mg	전문의약품	535,737	1회	115.5	1,237,552	병원별 약품 선택 자율
			5회	577.5	6,187,760	
시나지스 주사액 100mg	전문의약품	922,477	1회	115.5	1,065,461	
			5회	577.5	5,327,305	

- 미숙아 1인당 1회 평균 70만 원 정도로 추산
- 현재 접종가능 국내 예방백신은 “시나지스” 가 유일함.
- RSV 유행계절(10월~3월)에 한달 간격으로 5회 접종 권장
- 다음 1) 2)에 해당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10% 발생
 - 1) 32주 미만(생후 6개월 이하 접종 시)
 - 2) 32~35주에 태어나, ①10~3월 출생하고, ②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 이외, 본인부담금 100% 발생

※ 달성군 미숙아 등록 현황

구분	총 미숙아 수	32주 미만	32주~36주 미만	36주 이상
2023년	177명	23명	82명	72명
2024년 (10.10.기준)	114명	11명	62명	41명

※ 「모자보건법」 제8조(임산부의 신고 등) 제4항 및 5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미숙아 현황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60호
- 제 출 일: 2024년 9월 30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 상정 및 의결: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2024.10.16.)

2. 제안사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 정함(안 제12조)
- 그 밖에 용어 등 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 3000원을 삭제하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총리령 제1916호(2023.11.22.)의 개정에 따라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총리령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2024.11.23.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563호
- 제 출 일: 2024년 9월 30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4년 10월 4일
- 상정 및 의결: 제31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2024.10.16.)

2. 제안사유

-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2024. 12. 31.에 만료 예정으로 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회동의)에 따라 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논공읍 논공로 697-13	대지 : 993㎡, 건물 : 지상 3층(928.71㎡)	3명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근로자 상담 : 법률, 근로조건, 회계 상담 등
- 관내 근로자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상담실 운영
-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양·교육 사업
-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훈련
- 근로자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제공

다.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관장	사무장	직원	
인 원	3	1	1	1	

라. 위탁기간 : 2년(2025. 1. 1. ~ 2026. 12. 31.)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 심의

바.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24. 9. : 계획 수립, 성과평가 및 재위탁 적정성 심의 · 의결
- 2024. 10. : 군의회 동의 및 의결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함으로 의결

아. 성과평가 결과 : 적정(평균 89.8점)

자. 향후일정

- 2024. 10. ~ 11.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24. 12. : 위·수탁 협약 체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위탁운영)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기간(2023. 01. 01. ~ 2024.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을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 먼저, 달성군 논공읍 소재의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의 규모는 대지 993㎡, 건물 지상 3층(928.71㎡)으로 종사자는 관장을 포함하여 총 3명, 위탁운영비는 7천1백만 원입니다.
- 주요 업무는 지역 내 근로자에 대한 법률·회계 상담, 근로 고충해소를 위한 노동 상담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교육 등입니다.
- 2024년 9월 민간 위탁운영 성과평가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위탁 적정성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재위탁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 근로자복지관의 목적인 근로자 복지 증진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 단체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위탁을 통하여 각종 노동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의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수탁업체 선정으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업무의 수행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본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 달성군 근로자복지관 위탁현황

- 위탁기관 : 달성군
- 수탁기관 :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 위탁현황
 - 2007. 03. 14. 최초위탁 이후 2020. 12. 31.까지 2년 단위 7회 재계약 위탁
 - 2021. 01. 01. ~ 2022. 12. 31. : 8차 재위탁 공개 모집
 - 심의단체 :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금속노조 달성지구협의회
 - 최종선정 : 한국노총 달성지역지부
 - 2023. 01. 01 ~ 2024. 12. 31 : 9차 위탁 재계약

※ 대구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현황

- 위탁기관 : 대구광역시
- 수탁기관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 위탁현황 : 2006. 12. 26. 최초위탁 이후 2024. 12. 25.까지 3년 단위 6회 재계약 위탁

6. 질의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